

대행업체와 수용가의 분쟁사례

글/박 희 택(대한전기안전관리)

머리글

전기설비기술의 발달로 전기설비의 안정성이 증가되고 있는 최근에 여러가지의 전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사고로 번질때 임는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당사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서 발생되며 또한 전기설비 및 제품의 결함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볼때 뜻하지 않은 이들의 사고를 방지하려면 첫째, 전기안전관리의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둘째, 사고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근래에 사고를 풍부하게 경험한 현장기술자가 적어 사고 발생시에 즉시 대응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러한 견지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하다가 수용가로부터 피해보상청구를 받는 분쟁사례가 있어 참고로 회원제위께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분쟁사례를 소개코자 한다.

사례

수용가 몰드변압기가 일부 절연파괴되어 정전이 되었다. 우리회사 소속 점검자가 현장에서 점검하고 변압기 고장으로 판정하고 제작회사에 수리 의뢰하도록 수용가에 건의했다. 수용가측은 정전시간이 길어지면 상가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변압기를 빌려다가 고장변압기를 수리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 달라고

<표 1>

○○단지종합상가

1992. 8. 12.

상주임대제 호

수 신 : (주)○○전기안전관리사장

제 목 : ○○단지 종합상가 피해보상 신청

1. 오늘도 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 본 ○○단지 종합상가 80개 점포주 및 입주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바 1992년 7월 28일 08시 10분경 갑자기 정전됨에 따라 대행업소에 연락하여 전기안전 관리 담당자가 ○○단지 종합상가에 10시 30분에 도착하여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과 급한 마음으로 변압기가 파손된 것으로 오진 판단하였으며 당 관리소에서는 주위 아파트 전기주임 및 전기반장을 불러 점검을 요청한 바 점검결과 변압기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전기주임이나, 전기반장은 퓨즈를 먼저 투입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행업소 관리자는 변압기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여 대행업소 관리자 임의대로 판단하여 관리소장한테 의논 한번 없이 변압기 업소에 의뢰하여 오후 4시 30분에 변압기가 도착하였고 정전시간은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9시간 30분이 정전됨에 따라 상가 상인들의 진정·항의·신고가 밀할 수 없이 많으며 제작회사(주) ○○에 변압기 고장 여부를 의뢰 신청하여 7월 30일 1차 점검, 7월 31일 2차 점검결과 변압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음.

<60P계속>

제작회사(주) ○○직원은 퓨즈만 투입시켜 주었으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상가 전체 상인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던 바 ○○전기 대행업소는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상가 상인들의 피해 보상은 물론이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대한 전기 대행업소에서 변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 건 경 유

1. 대행업소 관리자의 성급한 오진 판단

2. 대행업소 관리자의 정확한 점검 미숙

이점 사장님께서 검토하시어 조속한 기일내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의 피해액을 첨부 신청합니다.

첨 부 : 1. 피해보상액 사본 1부

2. (주) ○○ 점검 확인서 1부

○○시 ○○구 ○○동 ○○단지 종합상가
회장 ○○○

1. 상가피해액대비표

업종별	품명	금액	비고
농협연세점	생선부	853,000원	1개 업소
농협연세점	식품부	722,000원	"
영광全面发展	조기	1,660,000원	"
수피	빙과류	300,000원	"
제과점	빙과류	1,270,000원	2개 업소
수족관	금붕어	550,000원	1개 업소
식당	고기 및 채소류	3,000,000원	"
치킨점	닭 및 채소류	500,000원	"
정육점	고기 저장소	500,000원	"
합계		9,355,000원	

2. 변압기 교체 및 부대시설대비표

업종별	금액	비고
변압기임대료	1,200,000원	월
인건비	1,000,000원	
합계	2,200,000원	
총합계		11,555,000원

출장확인서 제	결	계장	과장	차장	부장	전무	부사장	사장
	재							
출장기간	(자) 1992년 7월 31일 ~ (자) 199 년 월 일							
고객사	○○단지 종합상가	출장자(F)	○○○					
제품명 및 용량	M/TR 250 kVA	입력전압	22900					
		출력전압	380-220					
(D) 보수 구분	하자보수	제작년월	88.					
		제번						
(A) 경보내용	현상 및	M/TR3φ 250kVA Rφ 1 차측 COS FUSE 소순.						
(B) 원인								
		1. 1차와 대지간 2000MΩ 정상						
		2. 2차와 대지간 200MΩ "						
		M/TR정상판명 사료됨.						
(C) 처리내용	3. 1차측 각상 절연지지대 절연 CHECK Rφ : 0MΩ, Sφ : 1000MΩ, Tφ : 1000MΩ 으로 Rφ의 지지대 절연 파손으로 인한 COS FUSE단락 사료.							
	4. Rφ의 부스바 좌측하단부와 코아 지지대의 좌측 모 서리 부분 아크발생 혼적 발견 및 동시에 외함에도 아크흔적 발생.							
소요자재	부품명	수량	부품명	수량				
	※ 1차측 절연지지대							
	전량 교체 요망됨.							
	기존의 75KVA도 "							
확인인	상기 기기를 귀사 직원이 (점검) 보수, 시운전)하여 7월 31일 시부터 정상기동함을 확인함.							
고객사	○○ 단지 종합상가	전화						
소속및직위	관리소장	성명	이○○					

<표 2>

주식회사 대한전기안전관리

전안(기) 제92046호 (514-9382) 1992. 8. 26

수신 : ○○시 ○○구 ○○동

종합상가 번영회장

참조 : 관리사무소장

발신 : ○○시 ○○구 ○○동

(주) ○○전기안전관리

제목 :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회신

1. 귀 내용증명 ○○단지 종합상가 피해보상 신청 (92. 8. 12)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사의 정전사고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했고 사고의 단시간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되어 귀사의 피해보상 청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3. 우리회사는 이런 상황에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종단하고 귀사와의 안전관리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별첨한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종합 검토서 1부

2.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 관련서식 각 1부

문.

○○시 ○○구 ○○동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종합 검토서

사고명 : ○○동 ○○단지 종합상가 정전사고

사고일시 : 1992. 7. 28(화) 08시 10분경

복구일시 : 동 일 17시 30분경

정전시간 : 9시간 20분

조사자 : 소속 -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성명 - ○○○

자격 -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소지

1. 사고현황(이하 존칭어 생략)

- 가. MOF(계기용 변성기)의 1차측 R상, T상과 용량 250kVA 몰드변압기의 1차측 R상, T상의 퓨즈가 용단되어 있었다.
- 나. 사고변압기의 특고압측 쪽측단자와 우측단자의 전선 굴곡부 간에 FLASH OVER(전기 불꽃이 건너뛰는 현상)나 합선사고 때 발생하는 사고흔적이 있었고, 외함에도 지락(활선이 전기기기의 철제 부분에 접촉하는 사고)된 흔적이 있었으며, 우측 위의 접속전선 굴곡부에도 유사한 사고시 발생하는 그을린 현상이 심하였다.
- 다. 이 사고는 사고변압기 특고압측의 절연대가 불량한 것으로 판정하고 귀사 소속직원(관리소장외)에게 변압기를 수리하여야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 라. 사고변압기를 수리한 후에도 정확한 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으므로 한국 전기시험소(경기도 의왕시 소재)에 시험을 의뢰하고 합격판정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 주었다.

2. 전력 재공급 경위

- 가. 귀 소속직원들은 변압기 수리 등 전력재공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귀 상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력재공급을 긴급히 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빌려다가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사고 조사자에게 변압기 대여업체의 소개를 요청하였다.

나. 사고 조사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체에 긴급히 연락하고 그 업체에서 변압기를 대체함으로써 전력 재공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3. 귀사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의견

가. “변압기 파손으로 오전 판단 하였으며”에 대하여

(1) 귀 공문에 첨부된 ○○전기엔지니어링(주)의 출장확인서 중 처리내용 3항에서 R_ϕ (상)의 절연 저항이 $0(M\Omega)$ 으로 기록되어 특고압선이 누전상태임을 나타냈고, R_ϕ (상)의 지지대 절연파손으로 인한 COS(CUT OUT SWITCH) FUSE용단사고로 기록되어 있다.

(2) 등 확인서 소요자재 난에는 “1차측 절연지지대 전량교체 요망됨”으로 기록되어 변압기의 고장임을 분명히 했고 기존의 용량 75kVA변압기도 절연지지대를 전량 교체하여야 동일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전기주임이나 전기반장은 퓨즈를 먼저 투입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에 대하여

(1) 귀 요청대로 사고 당시의 현장에서 FUSE를 갈아 끼우고 전력을 재공급하면 동 FUSE가 다시 끊어짐은 물론 개폐기의 접점, 애자 등이 파손될 수 있고 변압기의 고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이 때 귀사에서 발생한 고장전류는 한국전력 변전소까지 배전로에 순간정전을 발생시켜 동일 선로에서 수천하는 수 많은 수용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

(3) 귀사에서 점검요청한 전기주임이나 전기반장이 공업고등학교나 공과대학에서 전기공학을 배웠는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실력이 심히 의심스럽다.

다. “대행업소 관리자 임의대로 판단하여 관리소장 한테 의논 한번 없이 변압기 업소에 의뢰하여”에 대하여

(1) 변압기를 빌려쓰는데 소요경비가 220만원이나 되는데 귀사의 동의 없이 안전관리자가 변압기의 대체를 임의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귀 소속 직원이 변압기 반입을 막았으면 되는 일이므로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라. 피해보상 요구에 대하여

(1) 상인들의 피해는 변압기 고장에 의하여 장시간 정전된 것이 원인인데도 점검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2) 안전관리자가 10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변압기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때가 정오 경이다. 만약 이때 ○○전기에 연락하여 ○○전기의 기술자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점검하고 절연판을 바꾸기 위하여 ○○전기에서 부속자재를 가져와 수리한 후 시험해서 재송전했다면 오후 5시 30분 이전에 전력을 재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왜냐하면 귀사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에서 사고 변압기를 점검하고 수리하는데 7월 30일, 31일 2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4. 종합 의견

가. 우리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였고 자신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최단시간에 사고를 복구하기 위하여 그날 18시까지 사고현장에 입회하는 등 혼신노력하였다.

나. 그러나 귀사는 피해보상청구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전기안전관리자의 “오전판단”으로 물어 세움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에게 기술능력이 부족하다는 명예훼손도 서슴치 않고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데 대하여 심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다. 귀사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전기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청에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해보상청구 및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절차는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의 행정절차와 별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우리회사와 소속 직원은 귀사로 부터 당한 명예훼손으로 사업운영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함으로 동력자원부, 서울특별시, 대한전기기사협회, 전국안전관리대행업 협의회 및 한국전기 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끝)

요청하였다. 점검자는 즉시 변압기 대여회사에 연락하고 대여회사측에서 단시간내에 복구했다.

1차 10시 30분부터 5시 30분 복구될 때 까지 우리나라 소속 전기안전관리사는 현장에 계속 입회하는 등 성의를 다했다.

15일 후 수용가족으로부터 느닷없이 피해보상청구서가 우리회사로 우송되었다 (표1참조) .

이달의 문화인물



외솔 최현배

문화체육부는 한글날(9일)이 들어있는 10월의 문화인물로 우리 말과 글을 잘고 닦는데 평생을 바친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년)를 선정, 학술대회와 전시회 개최, 기념문집 발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경남 울산에서 태어난 외솔은 1910년 한성고등보통학교(경기중·고등학교의 전신)에 들어가지만 그

내용은 변압기가 이상 없는데 점검과 판정을 잘못하여 장시간의 정전을 유발하였으며 이로인하여 상가의 생선, 식품, 빙과류 등 식품이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변압기 대여로 피해를 봤으니 금 11,555,000원을 보상하라는 것이었다.

당사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10여일 만에 피해보상을 할 수 없음은 물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회신과 함께 안전관리대행계약의 해지통보 및 해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발송했다 (표2참조) .

그러나 수용가에서는 해임신고서에 도장도 안찍고 3~4개월 끌다가 다른 대행업체와 계약하면서 우리와 안전전기대행업무를 해약했다.

맺음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대행업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사례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와 노력이 요구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향상시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는 길이 최선임을 명심하자. (E)

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를 그만두고 주시경이 가르치던 조선어강습원에 나가 우리말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 말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고 생각한 외솔의 한글 사랑은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평생에 걸친 신념으로 굳어졌다.

히로시마 고등사범을 거쳐 교토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외솔은 연희전문학교와 이화여전 강단에서 배달말과 배달정신을 가르쳤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에 시달리면서도 한글연구의 접점을 불태웠다.

외솔은 광복직후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한글의 체계화와 과학화에 심혈을 기울여 당시 황무지에 가까웠던 국어교육의 터전을 마련했다. 「조선민족 개생의 도」「우리 말본」「글자의 혁명」「나라사랑의 길」의 저서를 남겼다.